

음성자이 센트럴시티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 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사이버 견본주택(<http://xi.co.kr/es>)에서도 동시 운영되므로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예약 방문자 1인(동반 1인 허용)에 한하여 견본주택 입장과 관람이 가능합니다. [사전예약 방법 : 홈페이지(<http://xi.co.kr/es>) 참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 사항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 열화상카메라 또는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은 37.5도가 넘을 경우 ※ 견본주택입구에서 방문이력 시스템 입력을 거부할 경우 (방문자 성명, 연락처)
 - COVID-19 감염예방 및 확산상황,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감염증에 취약한 노령층, 아동 및 임산부는 견본주택 방문을 지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COVID-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정부정책으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단축근무가 시행되고 있으니,
-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청약신청 및 증빙서류 발급, 입금 불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에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9.27.**입니다. (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단지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649**이며,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자이 홈페이지(<http://xi.co.kr/es>) 및 자이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또는 ③ 네이버인증서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 후 재공급	O	O	X	X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 딜러구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 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2.10.04.(화)	2022.10.05.(수)	2022.10.06.(목)	2022.10.14.(금)	2022.10.15.(토) ~ 2022.10.19.(수)	2022.10.25.(화) ~ 2022.10.27.(목)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장소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견본주택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506) ※ 상기 기간은 당첨자만 해당되며, 서류제출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참조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에 따른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운영계획 변경 시 홈페이지(<http://xi.co.kr/es>) 안내 예정]

- 당첨자발표 이후 일반관람객은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되며,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의 자격확인 서류접수를 위한 목적으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기간 내 견본주택 관람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관람객 / 예비입주자의 경우 입장 불가)

■ 분양권 전매제한 (특별공급 / 일반공급)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주택공급 계약체결 이후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대금 총액의 10% 납부 후 전매가 가능하며, 전매 가능일자는 사업주체가 별도 통보**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는 2022.02.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음성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충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 처리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7.) 현재 음성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음성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① 「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 ②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③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7호 및 제4조 제5항에 의거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의거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 본 아파트는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역신하였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됩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판단)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단, 90일 이내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해외체류기간 확인사항]

사례 ①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 ②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이 불가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이 불가합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단독세대 또는 동거인(형제·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불인정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을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조, 제565호, 2018.12.11.〉부칙 제3조)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분양권 등' 매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르며, 특별공급 청약세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지역, 당첨제한 여부,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자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필요 (6개월 이상)	필요 (6개월 이상, 1순위)	필요 (6개월 이상, 1순위)	필요 (6개월 이상, 1순위)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치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추가 필요요건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적용	소득 또는 자산기준 적용	세대주 요건 필요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주자 저축 관련 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전환 이후 청약예금 ▶ 청약저축 재전환 불가)
-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기준금액으로 변경하여야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 해당지역/기타지역 전입일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전입 시 가능합니다.
- 세대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주민등록표등본 상 청약자가 세대주인 경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①, ② : 청약자 또는 세대원)		결과
부적격 예시	특별공급 당첨 [①] ⊕ 특별공급 당첨 [②]	①, ② 부적격
	특별공급 당첨 [①]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②]	① 부적격 / ②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추첨 불가
	특별공급 당첨 [①] ⊕ 특별공급 낙첨 [②]	① 부적격 ※ 낙첨자의 청약신청 이력으로 당첨자 부적격 영향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의거 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 요건 명확화 –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준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2018-784호, 2018.12.11. 부칙 제5조(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www.xi.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지역우선공급(해당지역 거주자 우선)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해당지역 거주자 우선)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및 10년 이상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제출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초)본',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밀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손상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수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 재분양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공급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계약자에게 발생하며, 「인지세법」 제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이고 세액은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입니다.
 - 「인지세법」 제8조 및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대한민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의거 인지세 가산세는 납부기한 이후 3개월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3개월초과 6개월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6개월초과 무(과)소납부 세액의 300%입니다.
 -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 및 위임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116㎡ 주택형의 경우 공급계약 체결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 행위자(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10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행위(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중 특별공급주택 자격을 갖춘 자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단,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3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 일반공급의 경우 해당지역 무주택세대주 거주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합니다. (단, 재당첨 제한,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 및 부적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아파트 공급을 위한 주요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과 관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제반 법령이 우선합니다.
 - 개정된 내용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약식표기	층 구분	해당 세대수	토지비	건축비	부가세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계약 시	2022.12.02.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입주자정기간
84TH	1층	3	55,460,604	412,539,396	-	468,000,000	10,000,000	3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140,400,000
	1층	4	66,547,811	334,047,445	33,404,744	434,000,000	10,000,000	3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130,200,000
	2층	4	66,547,811	344,956,535	34,495,654	446,000,000	10,000,000	3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33,800,000
	3층	4	66,547,811	351,320,172	35,132,017	453,000,000	10,000,000	3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135,900,000
	4~5층	8	66,547,811	357,683,808	35,768,381	460,000,000	10,000,000	3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138,000,000
	6~10층	20	66,547,811	364,047,445	36,404,744	467,000,000	10,000,000	3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140,100,000
	11~15층	20	66,547,811	369,501,990	36,950,199	473,000,000	10,000,000	3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141,900,000
	16층 이상	16	66,547,811	374,047,445	37,404,744	478,000,000	10,000,000	3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143,400,000
101A	1층	2	66,548,716	342,228,440	34,222,844	443,000,000	10,000,000	3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132,900,000
	2층	2	66,548,716	352,228,440	35,222,844	454,000,000	10,000,000	3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136,200,000
	3층	2	66,548,716	358,592,076	35,859,208	461,000,000	10,000,000	3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138,300,000
	4~5층	4	66,548,716	365,864,804	36,586,480	469,000,000	10,000,000	3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140,700,000
	6~10층	10	66,548,716	372,228,440	37,222,844	476,000,000	10,000,000	3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142,800,000
	11~15층	10	66,548,716	377,682,985	37,768,299	482,000,000	10,000,000	3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144,600,000
	16층 이상	24	66,548,716	382,228,440	38,222,844	487,000,000	10,000,000	3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46,100,000
	23, 27층	4	76,016,940	745,439,145	74,543,915	896,000,000	10,000,000	7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268,800,000
116PHA	27층	1	76,192,536	704,370,422	70,437,042	851,000,000	10,000,000	75,10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255,300,000
	116PHB														

■ 공통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기에 발코니 확장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주체에서는 부가세를 세대별로 적의 배분하였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 등 제세공과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 [종합토지세(분리과세 기준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나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 제곱미터(m²)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자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등의 면적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부면적과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호정산합니다. 다만, 소수점 이하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공급금액(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불출일)전에 납부합니다.

분양대금,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100-035-682468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 옵션)	140-013-949060	신한은행	(주)하나자산신탁

- 분양대금, 추가선택품목 (플러스옵션) 납부계좌는 서로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금의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신한은행 100-035-682468 예금주:(주)하나자산신탁)로 관리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이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약 1개월)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 (주)하나자산신탁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시행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 표기	구분	내 용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80%)
				계약 시	2023.03.03	
59	현관 PKG	자동증문 + 신발장하부 센서등	2,340,000	234,000	234,000	1,872,000
	현관 신발장 확대	신발장 확대 + 신발장하부 센서등 (※ 현관 PKG 선택 시 불가)	1,130,000	113,000	113,000	904,000
	바닥 마감재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 주방, 복도)	1,590,000	159,000	159,000	1,272,000
	마감·조명 Style Up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 시트판넬 +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리니어 조명 + 특화 조명 + 고급형 전자식 스위치(침실)	4,880,000	488,000	488,000	3,904,000
	주방 Style Up	주방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 루버천장 +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 특화조명 + 독립형 후드 + 음성인식 주방TV(13인치) + 주방상판 세라믹타일 + 플랩 상부장 + 특화 주방 가구(유럽산 하드웨어) + 키온장 인출식수납장	9,210,000	921,000	921,000	7,368,000
	안방 드레스룸 Style Up	고급형 대형드레스룸(벽 판넬 조명형)	4,510,000	451,000	451,000	3,608,000
74A	욕실 Style Up	가족/부부욕실 -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바닥) + 고급형 수전 및 세면대 + 특화조명 + 비데 일체형 양변기	5,220,000	522,000	522,000	4,176,000
	현관 PKG	자동증문 + 신발장오른장 센서등 + 신발장하부 센서등	2,450,000	245,000	245,000	1,960,000
	바닥 마감재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 주방, 복도)	1,890,000	189,000	189,000	1,512,000
	마감·조명 Style Up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 시트판넬 +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리니어 조명 + 특화 조명 + 고급형 전자식 스위치(침실)	4,990,000	499,000	499,000	3,992,000
	주방 Style Up	주방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 루버천장 +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 특화조명 + 돋립형 후드 + 음성인식 주방TV(13인치) + 주방상판 세라믹타일 + 플랩 상부장 + 특화 주방 가구(유럽산 하드웨어) + 키온장 인출식수납장	9,400,000	940,000	940,000	7,520,000
	안방 드레스룸 Style Up	고급형 대형드레스룸(벽 판넬 조명형)	3,270,000	327,000	327,000	2,616,000
74B	욕실 Style Up	가족/부부욕실 -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바닥) + 고급형 수전 및 세면대 + 특화조명 + 비데 일체형 양변기	5,230,000	523,000	523,000	4,184,000
	현관 PKG	자동증문 + 신발장오른장 센서등 + 신발장하부 센서등	2,450,000	245,000	245,000	1,960,000
	바닥 마감재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 주방, 복도)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마감·조명 Style Up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 시트판넬 +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리니어 조명 + 특화 조명 + 고급형 전자식 스위치(침실)	4,810,000	481,000	481,000	3,848,000
	주방 Style Up	주방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 루버천장 +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 특화조명 + 돋립형 후드 + 음성인식 주방TV(13인치) + 주방상판 세라믹타일 + 플랩 상부장 + 특화 주방 가구(유럽산 하드웨어) + 키온장 인출식수납장	9,700,000	970,000	970,000	7,760,000
	안방 드레스룸 Style Up	고급형 대형드레스룸(벽 판넬 조명형)	3,210,000	321,000	321,000	2,568,000
84A	욕실 Style Up	가족/부부욕실 -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바닥) + 고급형 수전 및 세면대 + 특화조명 + 비데 일체형 양변기	5,240,000	524,000	524,000	4,192,000
	현관 PKG	자동증문 + 신발장오른장 센서등 + 신발장하부 센서등	2,450,000	245,000	245,000	1,960,000
	바닥 마감재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 주방, 복도)	1,970,000	197,000	197,000	1,576,000
	와이드 다이닝 선택 시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 주방, 복도)	2,080,000	208,000	208,000	1,664,000
	팬트리 + 알파룸 선택 시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 주방, 복도)	2,330,000	233,000	233,000	1,864,000
	마감·조명 Style Up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 시트판넬 +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리니어 조명 + 특화 조명 + 고급형 전자식 스위치(침실)	5,980,000	598,000	598,000	4,784,000
84B	와이드 다이닝 선택 시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 시트판넬 +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리니어 조명 + 특화 조명 + 고급형 전자식 스위치(침실)	5,650,000	565,000	565,000	4,520,000
	팬트리 + 알파룸 선택 시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 시트판넬 +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리니어 조명 + 특화 조명 + 고급형 전자식 스위치(침실)	5,880,000	588,000	588,000	4,704,000
	주방 Style Up (와이드 다이닝)	주방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 루버천장 + 특화조명 + 돋립형 후드 + 음성인식 주방TV(13인치) + 주방상판 세라믹타일 + 플랩 상부장 + 특화 주방 가구(유럽산 하드웨어) + 키온장 인출식수납장 + 이얼랜드 + 팬트리 + 훌바	16,190,000	1,619,000	1,619,000	12,952,000
	주방 Style Up (팬트리 + 알파룸)	주방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 루버천장 + 특화조명 + 돋립형 후드 + 음성인식 주방TV(13인치) + 주방상판 세라믹타일 + 플랩 상부장 + 특화 주방 가구(유럽산 하드웨어) + 키온장 인출식수납장 + 포켓도어	10,780,000	1,078,000	1,078,000	8,624,000
	안방 드레스룸 Style Up	안방 + 드레스룸(벽 판넬 조명형) + 포켓도어 + 시트판넬	6,910,000	691,000	691,000	5,528,000
	베타룸 Style Up	드레스룸 확장형(일반 포스트형)	1,480,000	148,000	148,000	1,184,000
84C	욕실 Style Up	가족/부부욕실 -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바닥) + 고급형 수전 및 세면대 + 특화조명 + 비데 일체형 양변기	5,270,000	527,000	527,000	4,216,000
	현관 PKG	자동증문 + 신발장오른장 센서등 + 신발장하부 센서등	2,450,000	245,000	245,000	1,960,000
	바닥 마감재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 주방, 복도)	1,970,000	197,000	197,000	1,576,000
	와이드 다이닝 선택 시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 주방, 복도)	2,080,000	208,000	208,000	1,664,000
	팬트리 + 알파룸 선택 시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 주방, 복도)	2,330,000	233,000	233,000	1,864,000
	마감·조명 Style Up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 시트판넬 +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리니어 조명 + 특화 조명 + 고급형 전자식 스위치(침실)	5,610,000	561,000	561,000	4,488,000
84B	와이드 다이닝 선택 시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 시트판넬 +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리니어 조명 + 특화 조명 + 고급형 전자식 스위치(침실)	5,280,000	528,000	528,000	4,224,000
	팬트리 + 알파룸 선택 시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 시트판넬 +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리니어 조명 + 특화 조명 + 고급형 전자식 스위치(침실)	5,510,000	551,000	551,000	4,408,000
	주방 Style Up (와이드 다이닝)	주방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 루버천장 + 특화조명 + 돋립형 후드 + 음성인식 주방TV(13인치) + 주방상판 세라믹타일 + 플랩 상부장 + 특화 주방 가구(유럽산 하드웨어) + 키온장 인출식수납장 + 이얼랜드 + 팬트리 + 훌바	16,190,000	1,619,000	1,619,000	12,952,000
	주방 Style Up (팬트리 + 알파룸)	주방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 루버천장 + 특화조명 + 돋립형 후드 + 음성인식 주방TV(13인치) + 주방상판 세라믹타일 + 플랩 상부장 + 특화 주방 가구(유럽산 하드웨어) + 키온장 인출식수납장 + 포켓도어	10,780,000	1,078,000	1,078,000	8,624,000
	안방 드레스룸 Style Up	고급형 대형드레스룸(벽 판넬 조명형)	3,350,000	335,000	335,000	2,680,000
	욕실 Style Up	가족/부부욕실 -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바닥) + 고급형 수전 및 세면대 + 특화조명 + 비데 일체형 양변기	5,270,000	527,000	527,000	4,216,000
84C	현관 PKG	자동증문 + 신발장오른장 센서등 + 신발장하부 센서등	2,450,000	245,000	245,000	1,960,000
	바닥 마감재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 주방, 복도)	2,210,000	221,000	221,000	1,768,000
	마감·조명 Style Up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 시트판넬 +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리니어 조명 + 특화 조명 + 고급형 전자식 스위치(침실)	5,700,000	570,000	570,000	4,560,000
	홈바 선택 시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 시트판넬 +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리니어 조명 + 특화 조명 + 고급형 전자식 스위치(침실)	5,530,000	553,000	553,000	4,424,000
	주방 Style Up (홈바)	주방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 루버천장 + 특화조명 + 돋립형 후드 + 음성인식 주방TV(13인치) + 주방상판 세라믹타일 + 플랩 상부장 + 특화 주방 가구(유럽산 하드웨어) + 키온장 인출식수납장 + 이얼랜드 + 훌바	12,860,000	1,286,000	1,286,000	10,288,000
	안방 드레스룸 Style Up	고급형 대형드레스룸(벽 판넬 조명형)	2,650,000	265,000	265,000	2,120,000
84C	욕실 Style Up	가족/부부욕실 -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바닥) + 고급형 수전 및 세면대 + 특화조명 + 비데 일체형 양변기	5,270,000	527,000	527,000	4,216,000

약식 표기	구분	내 용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 시	2023.03.03	입주지정기간
84TH	현관 PKG	자동증문 + 신발장오픈장 센서등 + 신발장하부 센서등	2,450,000	245,000	245,000	1,960,000
	바닥 마감재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 주방, 복도)	2,190,000	219,000	219,000	1,752,000
	마감·조명 Style Up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 시트판넬 +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리니어 조명 + 특화 조명 + 고급형 전자식 스위치(침실)	5,400,000	540,000	540,000	4,320,000
	주방 Style Up	주방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 루버천장 + 특화조명 + 독립형 후드 + 음성인식 주방TV(13인치) + 주방상판 세라믹타일 + 플랩 상부장 + 특화 주방 가구(유럽산 하드웨어) + 키큰장 인출식수납장	9,840,000	984,000	984,000	7,872,000
	안방 드레스룸 Style Up	고급형 드레스룸(벽 판넬 조명형)	2,740,000	274,000	274,000	2,192,000
101A	욕실 Style Up	가족/부부욕실 -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바닥) + 고급형 수전 및 세면대 + 특화조명 + 비데 일체형 양변기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현관 PKG	자동증문 + 신발장오픈장 센서등 + 신발장하부 센서등	2,450,000	245,000	245,000	1,960,000
	바닥 마감재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 주방, 복도)	2,240,000	224,000	224,000	1,792,000
	디렉스 다이닝 선택 시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 주방, 복도)	2,350,000	235,000	235,000	1,880,000
	팬트리 + 알파룸 선택 시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 주방, 복도)	2,630,000	263,000	263,000	2,104,000
101B	마감·조명 Style Up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 시트판넬 +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리니어 조명 + 특화 조명 + 고급형 전자식 스위치(침실)	6,670,000	667,000	667,000	5,336,000
	디렉스 다이닝 선택 시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 시트판넬 +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리니어 조명 + 특화 조명 + 고급형 전자식 스위치(침실)	6,400,000	640,000	640,000	5,120,000
	팬트리 + 알파룸 선택 시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 시트판넬 +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리니어 조명 + 특화 조명 + 고급형 전자식 스위치(침실)	6,550,000	655,000	655,000	5,240,000
	주방 Style Up (디렉스 다이닝)	주방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 루버천장 + 특화조명 + 독립형 후드 + 음성인식 주방TV(13인치) + 주방상판 세라믹타일 + 플랩 상부장 + 특화 주방 가구(유럽산 하드웨어) + 키큰장 인출식수납장 + 아일랜드 + 팬트리 + 홀바	17,930,000	1,793,000	1,793,000	14,344,000
	주방 Style Up (팬트리 + 알파룸)	주방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 루버천장 + 특화조명 + 독립형 후드 + 음성인식 주방TV(13인치) + 주방상판 세라믹타일 + 플랩 상부장 + 특화 주방 가구(유럽산 하드웨어) + 키큰장 인출식수납장 + 포켓도어	11,260,000	1,126,000	1,126,000	9,008,000
101B	안방 드레스룸 Style Up	고급형 드레스룸(벽 판넬 조명형)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욕실 Style Up	가족/부부욕실 -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바닥) + 고급형 수전 및 세면대 + 특화조명 + 비데 일체형 양변기	5,390,000	539,000	539,000	4,312,000
	현관 PKG	자동증문 + 신발장오픈장 센서등 + 신발장하부 센서등	2,450,000	245,000	245,000	1,960,000
	바닥 마감재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 주방, 복도)	2,240,000	224,000	224,000	1,792,000
	디렉스 다이닝 선택 시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 주방, 복도)	2,350,000	235,000	235,000	1,880,000
101B	팬트리 + 알파룸 선택 시	유럽산 포셀린타일(거실, 주방, 복도)	2,630,000	263,000	263,000	2,104,000
	마감·조명 Style Up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 시트판넬 +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리니어 조명 + 특화 조명 + 고급형 전자식 스위치(침실)	6,870,000	687,000	687,000	5,496,000
	디렉스 다이닝 선택 시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 시트판넬 +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리니어 조명 + 특화 조명 + 고급형 전자식 스위치(침실)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팬트리 + 알파룸 선택 시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 시트판넬 +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리니어 조명 + 특화 조명 + 고급형 전자식 스위치(침실)	6,750,000	675,000	675,000	5,400,000
	주방 Style Up (디렉스 다이닝)	주방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 루버천장 + 특화조명 + 독립형 후드 + 음성인식 주방TV(13인치) + 주방상판 세라믹타일 + 플랩 상부장 + 특화 주방 가구(유럽산 하드웨어) + 키큰장 인출식수납장 + 아일랜드 + 팬트리 + 홀바	17,930,000	1,793,000	1,793,000	14,344,000
101B	주방 Style Up (팬트리 + 알파룸)	주방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 루버천장 + 특화조명 + 독립형 후드 + 음성인식 주방TV(13인치) + 주방상판 세라믹타일 + 플랩 상부장 + 특화 주방 가구(유럽산 하드웨어) + 키큰장 인출식수납장 + 포켓도어	11,260,000	1,126,000	1,126,000	9,008,000
	안방 드레스룸 Style Up	안방 + 드레스룸(벽 판넬 조명형) + 포켓도어 + 시트판넬	6,660,000	666,000	666,000	5,328,000
	베타룸 Style Up	드레스룸 확장형(일반 포스트형)	1,770,000	177,000	177,000	1,416,000
101B	욕실 Style Up	가족/부부욕실 - 유럽산 포셀린타일(벽, 바닥) + 고급형 수전 및 세면대 + 특화조명 + 비데 일체형 양변기	5,390,000	539,000	539,000	4,312,000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옵션) 관련 유의사항

- 포셀린타일 바닥 시공은 거실+주방+복도이며, 미 선택시 침실과 동일한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방 드레스룸 Style Up(유상) 선택 시 부부욕실 도어 위치가 변경되며, 침실1 도어와 간섭될 수 있습니다.
- 벽면 시트 판넬, 간접조명 등은 특화범위(유상옵션)선택 시 적용부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준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함적으로 승계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가전선택품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제조사	비고	공급금액	설치장소	선택	약식표기
59		3,460,000	거실 + 침실1	2대	
		4,630,000	거실 + 침실1 + 침실1개소	3대	
		5,970,000	거실 + 침실1/2/3	4대	
74A		3,480,000	거실 + 침실1	2대	74B
		4,820,000	거실 + 침실1 + 침실1개소	3대	
		6,430,000	거실 + 침실1/2/3	4대	
84A		3,660,000	거실 + 침실1	2대	
		5,270,000	거실 + 침실1 + 침실1개소	3대	
		6,450,000	거실 + 침실1 + 침실2개소	4대	
		7,860,000	거실 + 침실1/2/3/4	5대	
		5,270,000	거실 + 주방 + 침실1	3대	
		6,450,000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1개소	4대	
		7,860,000	거실 + 주방 + 침실1/2/3	5대	
84B		3,490,000	거실 + 침실1	2대	
		4,830,000	거실 + 침실1 + 침실1개소	3대	
		6,440,000	거실 + 침실1 + 침실2개소	4대	
		7,610,000	거실 + 침실1/2/3/4	5대	
		4,830,000	거실 + 주방 + 침실1	3대	
		6,440,000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1개소	4대	
		7,610,000	거실 + 주방 + 침실1/2/3	5대	
84C		3,660,000	거실 + 침실1	2대	
		5,270,000	거실 + 침실1 + 침실1개소	3대	
		6,450,000	거실 + 침실1 + 침실2+침실3	4대	
84TH		5,270,000	거실 + 주방 + 침실1	3대	
		6,450,000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1개소	4대	
		7,860,000	거실 + 주방 + 침실1/2/3	5대	
101A		5,270,000	거실 + 주방 + 침실1	3대	
		6,450,000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1개소	4대	
		7,860,000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개소	5대	
		9,030,000	거실 + 주방 + 침실1/2/3/4	6대	
101B		5,270,000	거실 + 주방 + 침실1	3대	
		6,450,000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1개소	4대	
		7,860,000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개소	5대	
		9,030,000	거실+ 주방 + 침실1 + 침실3개소	6대	
		10,200,000	거실+ 주방 + 침실1/2/3 + 침실4(또는 알파룸) + 베타룸	7대	
		5,280,000	거실 + 주방 + 침실1	3대	
		6,460,000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1개소	4대	
116PHB		7,870,000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개소	5대	
		9,040,000	거실+ 주방 + 침실1/2/3 + 베타룸	6대	
		6,460,000	거실 + 주방 + 침실1 + 가족실	4대	
116PHA		7,870,000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1개소 + 가족실	5대	
		9,040,000	거실+ 주방 + 침실1/2/3 + 가족실	6대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 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본 설치 품목인 에어컨냉매 매립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미설치 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옵션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관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탑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동 시 발생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이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되며, 설치된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추가 가전선택품목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공급업체
59A	74A	74B	84A	84B	84C	84TH	101A	2대	선택1	거실, 주방	1,840,000	자이에스앤디(주)	
	선택2	거실, 침실1	1,700,000										
	101B							3대	선택3	거실, 주방, 침실1	2,620,000		
	116PHA								선택4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4,180,000		
	116PHB							2대	선택1	거실, 주방	1,840,000		
	116PHB								선택2	거실, 침실1	1,700,000		
	116PHB							3대	선택3	거실, 주방, 침실1	2,620,000		
	116PHB								선택4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4,180,000		
	116PHB							6대	선택5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베타룸	4,960,000		
	116PHB								선택1	거실, 주방	1,840,000		
	116PHB							2대	선택2	거실, 침실1	1,700,000		
	116PHB								선택3	거실, 주방, 침실1	2,620,000		
	116PHB							5대	선택4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4,180,000		
	116PHB								선택5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가족실	4,960,000		

- 시스클라인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청정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천장에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쿨러, 감지기등)과 이격하여 위치를 고려하여 실제 공사 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별 명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 구성품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리모컨이며 천장형 공기청정기 1대당 제어용 리모컨 1개를 제공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빌코니 대파공간(전열교환기 설치)과 면한 침실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시스템에어컨이 병렬배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 (태양열 차단필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선택안	설치개소	공급금액
59	가시광선 투과율 50 / 70	7	1,600,000
74A		8	1,950,000
74B		9	2,090,000
84A		10	2,310,000
84B		8	2,010,000
84C		8	2,050,000
84TH		7	2,060,000
101A		8	2,050,000
101B		10	2,440,000
116PHA		13	4,820,000

추가 가전선택품목 (주방가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모델명	공급금액	비고	제조사
빌트인 냉장고	S715SI24B	5,750,000	홈바형	LG전자
	S695SI34B	7,650,000	디스펜서형	
빌트인 김치냉장고	K221PR14B	1,450,000	김치냉장고	
광파오븐	MZ385EBTAD	540,000	드로워포함	
식기세척기	DUB22S	1,100,000		
쿡탑	BEI3GTBI	1,220,000	인덕션 3구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태양열 차단필름, 주방가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기 시스템(시스클라인), 주방가전, 태양열 차단필름	신한은행	계약자별 가상계좌 부여	자이에스앤디(주)

- 유상옵션[시스템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주방가전] 공사비 납부 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며, 품목별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옵션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추가선택품목 (플러스옵션) 입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칙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주방가전은 시공 전문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주)에서 계약 체결 및 시공 예정으로 계좌가 상이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 옵션) 및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태양열 차단필름, 주방가전 관련 공통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또는 자재발주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사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빌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함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시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태양열 차단필름, 주방가전은 시행수탁자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과 무관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59	74A	74B	84A	84B	84C	84TH	101A	101B	116PHA	116PHB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 유공자 등	2	1	2	2	5	1	-	-	-	-	13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	2	2	5	1	-	-	-	-	13
	10년 이상 복무군인	2	1	2	2	5	1	-	-	-	-	13
	장애인	2	2	2	5	7	2	-	-	-	-	20
	우수선수 · 기능인	2	2	2	4	6	2	-	-	-	-	18
	중소기업 근로자	5	3	5	13	28	6	-	-	-	-	6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5	10	15	28	56	13	-	8	5	-	-	150
신혼부부 특별공급	30	20	30	56	111	26	-	-	-	-	-	273
생애최초 특별공급	15	10	15	28	56	13	-	-	-	-	-	137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4	3	5	8	17	4	-	2	2	-	-	45
합계	79	53	80	148	296	69	-	10	7	-	-	74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거 특별공급 당첨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소형 ·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등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1회 특별공급 간주)로 판단됩니다.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p>※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p>[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당첨(민간 사전청약 포함)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합니다.
무주택 요건	<p style="text-align: center;">[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구 분	내 용																						
	[주택 및 '분양권 등']																						
	<p>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p> <p>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p> <p>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을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p>																						
입주자저축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입주자저축 예치금액]</th> <th>음성군 또는 충청북도 거주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 이상</td> <td>300만원 이상</td> <td>250만원 이상</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 이상</td> <td>600만원 이상</td> <td>400만원 이상</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 이상</td> <td>1,000만원 이상</td> <td>700만원 이상</td> </tr> <tr> <td>모든 면적</td> <td>500만원 이상</td> <td>1,500만원 이상</td> <td>1,000만원 이상</td> </tr> </tbody> </table>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p>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음성군 또는 충청북도 거주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700만원 이상	모든 면적	5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음성군 또는 충청북도 거주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700만원 이상																				
모든 면적	5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p>▣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p> <p>① :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p> <p>② :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p> <p>③ :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p> <p>④ :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 · 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발표됩니다.)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 및 미계약 동 · 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37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음성군 또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입주자 저축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입주자저축 불필요)
 -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당첨예정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자
 -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를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은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

구분	해당기관
국가 유공자 등(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 충북북부보훈지청 보상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10년이상 복무군인	충북도청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우수선수	한국산업인력공단(대전지역본부) 국제기능경기부
우수기능인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종별타입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와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당첨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140% 범위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 확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추가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기입확인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불필요)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동/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50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음성군 또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입주자 저축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또는 입양자녀 포함) 이상을 둔 자
- 태아를 인정받기 위한 청약자는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임신부부의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를 확인하며, 입양부부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자녀는 청약자 또는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은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① 거주지역 ▶ ② 배점기준표 ▶ ③ 미성년 자녀 수 ▶ ④ 청약자 연령 ▶ ⑤ 추첨]

① 거주지역

- 해당지역(음성군) 거주자가 우선하며, 잔여물량 시 기타지역(충청북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②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

③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④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⑤ 추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① 미성년 자녀수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② 영유아 자녀수	15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영유아 2명	10	
		영유아 1명	5	
③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 청약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④ 무주택 기간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되어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⑤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0년 이상	15	- 청약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충청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⑥ 입주자 저축 기입기간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기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기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기입일 기준으로 산정

- ①, ②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③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④, ⑤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 ⑥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 ④ 무주택 기간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예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30세인 신청자와 만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만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 ⑤ 해당 시·도 거주기간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 확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추가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청약자	만 18세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출산증명서 또는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 시 10년 이상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27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음성군 또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입주자 저축에 기여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혼인신고일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인 자
- ④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2.07.01. ~ 12.31.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 (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준소유주택을 처분하고,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 및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세대에만 해당하며, 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거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태아를 인정받기 위한 청약자는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임신부부의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를 확인하며, 입양부부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은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자기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① 소득 ▶ ② 순위 ▶ ③ 거주지역 ▶ ④ 미성년 자녀 수 ▶ ⑤ 추첨]

① 소득기준

- 우선공급 [세대수의 50% (소수점 이하 올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세대수의 20% (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합니다.
- 추첨공급 [세대수의 30%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② 순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1순위에 우선공급)

- 1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 「민법」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 혼인외의 출생자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재혼일 경우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녀가 없거나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③ 거주지역

- 해당지역(음성군) 거주자가 우선하며, 잔여물량 시 기타지역(충청북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④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 자녀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하여 산정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로 청약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
※ 청약자의 배우자가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⑤ 추첨

- 추첨공급(30%)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음성군)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2022년 적용 (단위 : 원)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 6,208,934	~ 7,200,809	~ 7,326,072	~ 7,779,825	~ 8,233,578	~ 8,687,331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6,208,935 ~ 7,450,721	7,200,810 ~ 8,640,971	7,326,073 ~ 8,791,286	7,779,826 ~ 9,335,790	8,233,579 ~ 9,880,294	8,687,332 ~ 10,424,797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6,208,935 ~ 8,692,508	7,200,810 ~ 10,081,133	7,326,073 ~ 10,256,501	7,779,826 ~ 10,891,755	8,233,579 ~ 11,527,009	8,687,332 ~ 12,162,263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7,450,722 ~ 9,934,294	8,640,972 ~ 11,521,294	8,791,287 ~ 11,721,715	9,335,791 ~ 12,447,720	9,880,295 ~ 13,173,725	10,424,798 ~ 13,899,730
추첨공급 (3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 (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우선공급 - 기준소득 [5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공급 - 상위소득 [2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첨공급 [3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원)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원수 적용기준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 ÷ 근무월수)	상기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연간소득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사업자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장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기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 전년도 1월1일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여,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h>주택</th> <th>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h> <th>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h> </tr> </thead> <tbody> <tr> <th>단독주택</th> <td></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h>주택 외</th> <td></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제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p>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p> <p>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p>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p>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p>	
	<p>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p>	
	<p>①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p>	
자영업자	<p>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p>	세무서(홈택스)
	<p>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p>	① 세무서(홈택스) ② 등기소
	<p>①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p>	세무서(홈택스)
	<p>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국민연금관리공단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p>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p>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p>•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p>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p>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p>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또는 올해 소득이 있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	<p>•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상기 내용 참조
2021.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자	<p>• 비사업자 확인각서</p>	접수장소 비치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7년 이내의 혼인기간 또는 혼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주기간 확인※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발급처 :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 가능
	소득증빙서류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추가서류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출산증명서 또는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불가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주민등록번호 공개체크)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기입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동/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자격과 입주자격을 충족한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 시 10년 이상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37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음성군 또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입주자 저축에 기여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분양권 등' 포함)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④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가구 :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 1인 가구(단독세대)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 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추첨공급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1인 가구(단독세대가 아닌 자) : 직계존속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 시 추첨공급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2.07.01.~ 12.31.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 (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공급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⑥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이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소득세 납부내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단,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불가합니다.

※ 청약자가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을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 미혼인 자녀는 입양을 포함하며, 청약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세대에만 해당하며, 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은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① 소득 ▶ ② 거주지역 ▶ ③ 추첨]

① 소득기준

- 우선공급 [세대수의 50% (소수점 이하 올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세대수의 20% (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합니다.

- 추첨공급 [세대수의 30% (1인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② 거주지역

- 해당지역(음성군) 거주자가 우선하며, 잔여물량 시 기타지역(충청북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③ 추첨

■ 추첨공급(30%)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음성군)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확인사항 및 발급처
공통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세무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해당직장 / 세무서]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		<p>상기 공통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p> <p>+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p>

※ 청약 당해연도를 포함 과거 5개 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1, 2013, 2015, 2018, 2021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2022년 적용 (단위 : 원)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130% 이하	~ 8,071,614	~ 9,361,052	~ 9,523,894	~ 10,113,773	~ 10,703,651	~ 11,293,530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130% 초과 ~ 160% 이하	8,071,615 ~ 9,934,294	9,361,053 ~ 11,521,294	9,523,895 ~ 11,721,715	10,113,774 ~ 12,447,720	10,703,652 ~ 13,173,725	11,293,531 ~ 13,899,730
추첨공급 (30%)	1인가구	160% 이하	~ 9,934,294	~ 11,521,294	~ 11,721,715	~ 12,447,720	~ 13,173,72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 (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1인가구 청약자 포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원)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가구원수 적용기준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청약자의 직계존속(청약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 ÷ 근무월수)	상기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연간소득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사업자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토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제외사항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역,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p>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p> <p>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p>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p>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p>	
	전년도 전직자	<p>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p>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p>①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p>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p>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p>	세무서(홈택스)
	법인사업자	<p>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p>	① 세무서(홈택스) ② 등기소
	신규사업자	<p>①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p>	세무서(홈택스)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기차세 확정 신고서(부분)	국민연금관리공단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p>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p>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p>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p>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또는 올해 소득이 있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	2021.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자	<p>•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p>• 비사업자 확인각서</p>	상기 내용 참조 접수장소 비치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 확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발급처 :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 가능
	소득증빙서류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추가서류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출산증명서 또는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주민등록번호 공개체크)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대리인 접수 시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비혼의 청약자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건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자격과 입주자격을 충족한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 시 10년 이상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45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음성군 또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 ② 입주자 저축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 ④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가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합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한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 청약자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등재 + 계속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2년 등재 시 노부모부양자 신청자격 불인정)
- 특별공급 청약은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 ·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① 거주지역 ▶ ② 가점산정 기준표 ▶ ③ 추첨]

① 거주지역

- 해당지역(음성군) 거주자가 우선하며, 잔여물량 시 기타지역(충청북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② 가점산정 기준표

- 청약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에 의거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추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 확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추가서류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대리인 접수 시	혼인관계증명서	청약자	만 30세 미만 나이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이 존재하거나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기입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동/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 시 10년 이상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가점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혼인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하며,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p>※ 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1년 이상 ~ 2년 미만	3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2년 이상 ~ 3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3년 이상 ~ 4년 미만	5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4년 이상 ~ 5년 미만	6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5년 이상 ~ 6년 미만	7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6년 이상 ~ 7년 미만	8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7년 이상 ~ 8년 미만	9	15년 이상	17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신청자격

신청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음성군 또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성년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음성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p>※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②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③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청약 신청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종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됩니다.) 총별·동별·호별·형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청약 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이후 변동 시 당첨자는 사업주체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거주구분	순위	공급방법	신청자격
1. 해당지역 : 음성군 거주자	1순위	전용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기타지역 : 충청북도 거주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구 분	음성군 또는 충청북도 거주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700만원 이상
모든 면적	5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 입주자 저축 관련 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전환 이후 청약예금 ►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은 불가)
-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기준금액으로 변경하여야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 해당지역/기타지역 전입일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전입 시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① 순위 ► ② 거주지역 ► ③ 가점산정 기준표 ► ④ 추첨]

① 순위

- 1순위 :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자

② 거주지역

- 해당지역(음성군) 거주자가 우선하며, 잔여물량 시 기타지역(충청북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③ 가점산정 기준표

- 청약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에 의거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접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추첨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및 세대구성원과의 관계 확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추가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청약자	만 30세 미만 나이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이 존재하거나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대리인 접수 시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 시 10년 이상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공급 청약 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혼인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p>•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p> <p>•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p>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p>※ 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1년 이상 ~ 2년 미만	3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2년 이상 ~ 3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3년 이상 ~ 4년 미만	5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4년 이상 ~ 5년 미만	6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5년 이상 ~ 6년 미만	7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6년 이상 ~ 7년 미만	8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7년 이상 ~ 8년 미만	9	15년 이상	17	
총점	84					

$$\text{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53조, 「별표1」의 1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산정기준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부칙 제3조)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분양권 등' 매수자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이하 '소형·저가주택 등'이라 한다.)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해당 주택형의 청약경쟁이 있었으나 계약이 되지 않은 미계약 물량은 제외)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3) 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청약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신정합니다.

일반공급 무주택기간 판단기준

- 무주택기간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청약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

예시1 : 미혼인 청약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청약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3년, 청약자가 주택을 처분한지 5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3 : 기혼(만 26세 혼인)인 청약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 26세 혼인)인 청약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직계비속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8년.

예시5 :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청약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

예시6 : 현재 만 28세 미혼인 청약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청약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② 부양가족수 인정 적용기준

산정기준

1)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청약자 본인은 제외하여 산정)

- 가) 청약자의 배우자
- 나)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무주택 직계존속
 - 다)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 손자녀 포함)를 아래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2) 배우자 -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합법적인 배우자로 확인되면 국·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3) 무주택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배우자도 세대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나) 단, 직계존속 1인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 ※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합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
 - (예 : 청약자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등재 + 계속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2년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
 - 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불가
 - 마) 직계존속의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하며, 생모라 하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존속 인정 불가
 - 4)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 손자녀를 포함하며,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나) 만 30세 이상인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 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청약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 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불가
 - ※ 만 30세 미만 직계비속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합니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 및 ②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다만, ②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 적용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음성군 거주자가 충청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내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되는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 시에는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 대상자	신청 일자	신청 방법	신청 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자	2022.10.04.(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견본주택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506)
일반공급	1순위	2022.10.05.(수)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대행은행 창구
	2순위	2022.10.06.(목) 09:00~17:30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 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접수시간 : 09:00~16:00)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접수된 서류를 계약 시 구비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나, 계약 시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청약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또는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사]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스마트폰 청약사]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활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자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합니다.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합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분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분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일반공급 청약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6:00)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척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입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 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 · 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기관주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2.10.14.(금)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p>※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p>
일반공급	1순위 /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됩니다.)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 · 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척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전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10.14.(금) ~ 2022.10.23.(일)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p>※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p>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공일시		2022.10.14.(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일정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구분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 일정/장소 변경 시 재안내 예정)		계약기간																		
제출기한	2022.10.15.(토) ~ 2022.10.19.(수)		2022.10.25.(화) ~ 2022.10.27.(목)																		
대상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 예비입주자 계약기간은 추후 별도 통보																		
제출장소	견본주택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5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서류제출 불가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불가한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부적격 통보를 받은 세대의 해당서류</th> <th>대상</th> <th>서류제출 유의사항</th> </tr> </thead> <tbody> <tr> <td>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td> <td>해당 주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td></tr> <tr> <td>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td> <td>해당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td></tr> <tr> <td>단신부임 입증서류</td> <td>청약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p>※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 시 생업사정 불인정</p> </td></tr> <tr> <td>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td> <td>배우자 및 세대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p>※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p> </td></tr> <tr> <td>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td> <td>해당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p>※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p> </td></tr> </tbody> </table>				부적격 통보를 받은 세대의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단신부임 입증서류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p>※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 시 생업사정 불인정</p>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p>※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p>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p>※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p>
부적격 통보를 받은 세대의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단신부임 입증서류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p>※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 시 생업사정 불인정</p>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p>※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발급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p>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p>※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p>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청약자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분)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대리인 계약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동/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구분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서류제출기간 (※ 일정/장소 변경 시 재안내 예정)	예비입주자 추첨 / 계약기간
제출기한	2022.10.20.(목) ~ 2022.10.21.(금)	※ 추후 별도 통보
제출장소	견본주택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5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서류제출 불가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경우 견본주택으로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당첨자와 동일하게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수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도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급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로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 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2차 계약금에 대하여는 할인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 미적용)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청약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6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합니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9	-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판단 사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0호

- 청약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
- 청약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소유)

※ 경쟁 발생여부는 최초 접수경쟁률로 판단합니다.

구분	공급세대	접수	당첨자	정당계약 (분양권①)	잔여세대		잔여세대 추가계약 (분양권②)	분양권 현황 (주택소유 판단)
					미분양	미계약		
A주택	100	200 (경쟁)	100	100	×	×	×	• 분양권① 주택소유
B주택	100	200 (경쟁)	100	80	×	20	20	• 전체 분양권 주택소유 (미분양 아님)
C주택	100	50 (미달)	50	30	50	20	70 (50+20)	• 분양권① : 주택소유 / 분양권② : 전체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 포기 후 분양권② 계약 시 주택소유)
D주택	100	50 (미달)	50	50	50	×	50	• 분양권① : 주택소유 / 분양권② : 주택 미소유

※ 잔여세대 추가계약(분양권②) : 사전예약접수, 사후추가접수, 사업주체 선착순 모집에 의한 계약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에 따른 계약자는 모두 분양권(주택소유)으로 간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공급 주택」]

소형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독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저가주택 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 '소형 저가주택 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 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판정기준 및 '소형 저가주택 등' 특례기준이 경합할 경우의 적용기준

'소형 저가주택 등' 경합 시	주택 수	적용기준
[① 제53조 각 호(제5호 제외)] ⊕ [②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	-	①, ② 무주택 인정
[① 제53조 각 호] ⊕ [② 제5호(20㎡ 이하)]	1	① 무주택 인정 / ② 특례 미적용
[① 제53조 제2호(농어가주택 등) ⊕ [②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 ⊕ [③ '소형 저가주택 등']]	1	①, ② 무주택 인정 / ③ 특례 미적용
[① 제53조 각 호(5호 제외 - 20㎡ 이하)] ⊕ [② '소형 저가주택 등']	1	① 무주택 인정 / ② 특례 미적용
[① 제53조 제5호(20㎡ 이하)] ⊕ [② '소형 저가주택 등']	2	①, ② 특례 미적용
[① '소형 저가주택 등'] ⊕ [② '소형 저가주택 등']	2	①, ② 특례 미적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 등' 또는 제53조 각 호의 주택을 기 처분한 경우

'소형·저가주택 등' 또는 제53조 각 호의 주택을 기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준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① '소형·저가주택 등'	기 매각	⊕	② 제53조 각 호(5호 제외)	기 매각	무주택 인정	①, ② 보유한 기간 모두 무주택으로 산정 가능
① '소형·저가주택 등'	기 매각	⊕	② 제53조 각 호(5호 제외)	보유		①, ② 보유한 기간 모두 무주택으로 산정 가능
①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	⊕	② 제53조 각 호(5호 제외)	기 매각		①, ② 보유한 기간 모두 무주택으로 산정 가능
①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	⊕	② 제53조 제5호	기 매각		②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산정
①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	⊕	② '소형·저가주택 등' (제9호)	기 매각		②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산정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최저가점이 예비입주자와 동일 점수일 경우 제외)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시 무이자 조건으로 응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권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취급기관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계약금 납부 이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담보대출 유무,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주택소유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기준으로 안내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정부정책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시행위탁자가 중도금대출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자정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기로 하며, 입주자정 최초일 이후부터는 발생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수분양자)가 직접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선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시행위탁자가 대납한 이자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면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과 잔금을 실입주자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납할인은 입주자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자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자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자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자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자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약 3일 전부터 약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을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3개소,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 필라테스,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카페&라운지, 작은도서관, 독서실, 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보호자대기소, 멀티코트, 용역휴게실, 관리사무소, 입주민회의실, MDF실, 방재실, 주민운동시설 2개소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시설) 등
------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내진중요도	등급 : VII
-------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VII)으로 표기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항,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계획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계획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계획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 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 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바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15. 주체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체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체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체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체무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 이전에 그 주택공급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체무자의 정상적인 주택공급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체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체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광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문의 바랍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 본 공급시설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라온도시개발(이하 '시행위탁자'라 함), 시행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수탁자'라 함) 및 시공사 지에스건설(주)(이하 '시공사'라 함) 간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인 (주)라온도시개발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2.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와 시행수탁자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시행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인 (주)라온도시개발에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인 (주)라온도시개발에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3.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위탁자 겸 수탁자인 (주)라온도시개발과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주)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4.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본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협약, 계약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협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6.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
상 호	(주)경호엔지니어링	(주)토문엔지니어링	(주)수양엔지니어링
금 액	5,331,134,600	932,938,800	968,000,000

※ 상기 감리금액은 인허가 및 실제공사 진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현황

구 分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 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라온도시개발	지에스건설(주)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7, B동 2158호 (영천동, 금강펜타리움 IX타워)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그랑서울)
등록번호	110111-1714818	134811-0651209	110111-0002694

- 인터넷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감자재 목록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화디자인 계획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단지 내 균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및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충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대피 시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탈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하거나 적재해서는 안됩니다.

설계 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 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일반사항	<p>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자재 수준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p> <p>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해 적용됩니다.</p> <p>일부 세대는 공시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p> <p>CLUB XIAN은 입주자정기간 경과 후 관리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CLUB XIAN 운영 홍보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운영 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민 결의 등에 의해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CLUB XIAN요금은 사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소모품비·수도광열비·총당금 등 제3자 운행비용을 포함하며, 관리수입으로 전액 귀속됩니다.</p>
인허가	<p>각종 홍보물은 2022년 9월 주택사업계획 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p> <p>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어린이공원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음성군 협의내용에 따라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2017년 9월 5일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p> <p>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p> <p>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남측에는 무국로가 접하여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저작권증정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단지 경계부는 도로외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헛스(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부지내 옻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p> <p>기本事설의 위치,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일정, 난세우발시설, 분묘 및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등</p> <p>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 및 주변도로에 교통체증과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p> <p>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p> <p>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본시설 등을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시공사와 무관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음성군청지구 도시개발구역 기본시설 공사가 지연 될 경우 아파트 입주 이후에도 상당기간 기본시설 공사로 인해 소음·분진발생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지내 공공하수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향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p> <p>사업자 인근 대중교통계통 광명선원(공원묘지 포함) 및 하수종밀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특수작전 항공단 활로일대에 위치하여 주·야간 항공기 이·착륙과 비행에 따른 항공소음을 및 진동, 하강음, 불시착 등으로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추후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음성군청지구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에 따른 본 아파트 단지 남동쪽에 종로1-금왕1호선의 20m도로, 남쪽에 소로1-3호선 10m도로, 서쪽에 소로1-금왕1호선 10m도로가 설치되고, 지구단위 계획 지침상 사업자 남동쪽에 어린이공원 및 체육시설, 공용주차장이 조성되며, 사업자 및민편에 시설의 이용을 위한 차량출입구가 설치됩니다.</p> <p>또한 사업자 서쪽 및 북쪽에 원종노지가 조성되어, 사업자서쪽 단지내에 통행을 위하여 2m의 보도가 설치되어 및 외부인의 이용 및 출입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음성군청지구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에 따른 본 아파트 서쪽 소로1-금왕1호선의 10m도로는 사업자 서쪽을 지나가는 도로가 아닌</p> <p>사업자 북쪽 원종노지에서 차량이동의 단절되는 막하는 구조로 도로로서 추후 병목산 등산객의 이용으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사업자 남동쪽의 종로1-금왕1호선의 20m도로는 사업자 부출입구에서 도로가 단절되어, 음성군청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p> <p>추후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될수 있으며, 사업시기는 음성군의 결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사업자 북쪽의 병목산 아래 원종노지공간과 사업자와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은 기준에 설치되어 있던 옹벽으로,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인가 및 2017년 최초 사업승인 당시 옹벽의 존재가 결정되는 시점입니다. 이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옹벽과 관련된 사항을 기법적사항 준수로 협의 완료된 사항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사업자 북쪽의 병목산 우수 유역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이 협의의 의견에 따라 병목산에서 발생한 우수는 사업자 내부를 통하여 시 우수관에 연결하여 처리하도록 기 협의된 사항으로, 사업자 110동 인근에서 단지외곽을 경로하여 114동 전면 종로1-금왕1호선 20m도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p> <p>추후 입주 후에는 공동주택에서 우수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사업지 및 도로 단지주변환경	<p>초등학교·중학교·체육관·문화센터·체육관 등으로 향후 배정될 예정이며, 향후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중학교는 무국중학교에 학생들을 추첨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고등학교의 일반 고교 학군·성별·학년별로 전체 고등학교 지원 분야 배치되어 향후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주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단지	<p>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p> <p>단지 단지 출입구에는 경비실과 함께 학원처럼 승하자를 위한 스쿨버스존이 설치되어, 차량을 회차할수 있는 공간이 설치됩니다.</p> <p>중랑광장에 인접한 주동의 저층세대에서는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101동 전면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어, 인근에는 전기실, D.A. 발전기실이 설치되어 발전기 가동 시 소음, 진동, 연기 및 사생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자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p> <p>단지내, 외에 래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 옻벽 등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용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각 동별 계단실 내 청호는 일부는 고정형, 일부는 프로젝트형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형의 적용위치는 층별,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p> <p>단, 103동, 106동, 3,4호의 엘리베이터 승강장에 청이 없으나 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엘리베이터내 청호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p> <p>105동의 최상층에는 클럽클라우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동 및 세대에서는 클럽클라우드 내부조명 및 외부경관조명으로 인한 빛의 신란이나, 설비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사업자 북동쪽 및 북쪽(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111동, 112동)의 세대 전후면은 인접지역과 래벨차이로 인하여 사업자 외곽으로 보강도 옹벽 등이 설치되어, 안전을 위하여 펜스 등이 설치될수 있어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이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101동, 102동, 103동, 114동, 115동, 116동 등에는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이 위치하여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학교	<p>VIII</p>

구분	내용
	<p>엘리베이터의 대수 및 속도, 인승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각 동의 이격거리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자전거 보관소 위치와 면적에 따라 설치 대수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101동 1호, 102동 1호, 104동 1호, 108동 1호 근처 옥외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115동 1호, 공동시설(클럽자이인) 인근에 옥외엘리베이터, 110동, 114동 인근에 옥외계단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및 조망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각동의 필로티 전, 후면에는 제연헬름의 긁기 그림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크기 및 형태는 용량 및 부하 산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계단실 창호 및 세대 청호가 인접하여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을 확인 바랍니다.</p> <p>105동 3,4호라인, 107동 4,5호라인의 경우 지하1층에서 세대 진입시 주민공동시설을 통해 진입해야 하며, 주민공동시설의 통제 시 동 출입에 제한이 있을수 있으며, 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모델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승인도서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본 단지의 지하층에서 주동진입시 지하주차장과 레일차이로 인하여 경사로가 설치됨으로 견본주택내 사업승인 도서(주차장 평면도),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102동, 103동, 104동 인근에 게스트하우스가 설치되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103동 남측에 비상차량 출입구가 계획되어 소음 및 사생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을 확인 바랍니다.</p> <p>108동 전면에 어린이집 및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및 분진등이 발생할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109동 전면에 다함께풀센터 및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및 분진등이 발생할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110동, 113동, 112동 후면에 주민운동시설(포장장 등) 이 설치되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111동 전면에 아너스클럽이 설치되어 소음 및 분진등이 발생할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105동, 107동 사이, 107동, 109동 사이 지하1층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이용을 위한 썬룸, 옥외계단, 엘리베이터,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및 사생활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105동 1,2호, 107동 1,2,3호, 108동, 106동, 109동의 경우 지하 1층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을 직접 진입할 수 없으며 주민공동시설 진입시 주민공동시설 출입구를 통하여 진입해야 합니다.</p> <p>103동은 주차장 및 자상에서의 진입이 가능하며, 세대 내 통풍이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103동 1호, 2호, 3호가 인접되어 있어 세대 간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103동 지붕은 지지체 요청으로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지붕 인근 102동과의 세대간섭 및 전면부 보행동선에서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106동, 109동 인근에 우수주수조가 설치되어, 104동, 115동 인근에 지하주수조가 설치되어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02동 전면과 103동 사이공간은 지하2층 지하주차장에서 연결되는 레밸리제로 지하주차장 이용자들이 102동 전면을 이용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106동 4호라인 저층부는 지하주차장 이용차량으로 인하여 조망권 침해, 소음 및 차량불법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09동 후면부와 110동 후면부 및 북쪽 1호라인 저층부에는 배수로 및 경사로로 인하여 조경설이 설치되어,</p> <p>이용에 불편이 발생할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110동 4호라인 및 114동 1호라인 후면부에는 지하에서 연결되는 옥외계단이 계획되어 있으며, 비가림을 위한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어 조망 및 소음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범위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설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 각종 시설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분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통,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억류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낙간턱의 높이, 낙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동 출입구의 정비율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구간별 사업부지 단지 구간에 조경식 쌓기 또는 용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목탑동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가기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정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후 지내례식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바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차강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어,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하고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p> <p>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단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배치도 상에 표기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조경공간이 지하시설을 허가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장,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에 부담하여야 합니다.</p> <p>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해,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웃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p> <p>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p> <p>- 이동통신 설비설치 예정위치 : 102동, 105동, 106동, 107동, 110동, 114동, 116동 옥상층 및 106동, 114동 지하2층 동전기실 및 지하3층PIT</p> <p>도시가스 배관의 세대내 월월한 일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정과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일부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단지 모형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단지 배치상 래일차이에 의해 대로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대로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의 레벨차이에 따른 용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고 및 관로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p> <p>아파트 단지 출입구의 형태, 폭, 식재 구성 및 벌워, 마감재, 공간 구성, 디자인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는 116동 인근에 주차장 주출입구가 설치되고 105동 및 114동 인근에 주차장 부출입구가 설치됩니다. 116동 인근 주출입구는 입주민만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105동 및 114동 인근 부출입구의 경우 입주인 및 방문차 차량 출입이 가능합니다.</p> <p>101동, 116동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나, 차량통행으로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옥외계단 및 육외 엘리베이터는 실시간 공정에서 디자인 설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외장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벌코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욕상 구조물 등), 공동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용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밸류저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p> <p>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브릭, 페인트, 볼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기타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문주는 전임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p> <p>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외부 마감재 부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부양 및 디자인에 대해</p> <p>타사 및 디자인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p> <p>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재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시유 발생 및 미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p> <p>아파트 욕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방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경관조명은 빛공해 및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p> <p>펜트하우스 및 최상층 세대는 경관조명 및 BI 조명으로 인하여 빛 간섭이 있습니다.</p>
외관계획	<p>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설외기, 배기팬, 설비사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옥외계단,</p>
공용시설	<p>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설외기, 배기팬, 설비사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옥외계단,</p>

구분	내용
	<p>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지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p> <p>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p> <p>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기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및 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자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클럽자이인)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p> <p>주민공동시설(클럽자이인)은 기능적·환경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면에서 차별화된 특성을 갖는 공동체로서, 주민공동시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주거·생활·문화·사회·경제 활동을 하는 공동체입니다.</p> <p>본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약장과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인해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p> <p>쓰레기 수거차량의 산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리며 미임한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클럽자이인(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카페&라운지 등) 및 부속동(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어나스클럽 등) 일부 공동부에는 입주자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7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p> <p>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요금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되는 운동기구는 준공 후 입주자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설치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p>클럽클라우드(비온드하니컴), 작은도서관(교보문고), 카페&라운지(SPC) 서비스 및 자이안비, 자이 멤버쉽 등을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상품변경 또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p> <p>클럽클라우드(비온드하니컴), 작은도서관(교보문고), 카페&라운지(SPC) 서비스 및 자이안비, 자이 멤버쉽 등은 향후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 예정이나,</p> <p>입주자대표회의 인수인계 시 서비스가 변경/수정/중단될 수 있습니다.</p> <p>입주민 부대복리시설인 클럽클라우드(비온드하니컴), 작은도서관(교보문고), 카페&라운지(SPC)는 별도 약정된 기한 동안 사업주체에서 비용을 지급하여 운영 예정이며, 해당 공간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동력용수광열비 등은 입주민 공동관리비로 부과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p>다만, 동력용수광열비 등의 부담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까지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관리비로 부담되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이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입주민 전체의 공동관리비로 부과되거나 사용자수(자) 부담으로 부과 예정이니 계약자께서는 계약시 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셔야 합니다.</p> <p>클럽클라우드(비온드하니컴)는 다이닝서비스를 위한 주방 기기 및 장비일체를 시공할 예정이며, 키오스크를 통해 무인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용 시 개별 비용이 발생하는 유료서비스이며, 예정된 식수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및 방식은 추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클럽클라우드(비온드하니컴), 작은도서관(교보문고), 카페&라운지(SPC)는 이용 시 개별 비용이 발생하는 유료서비스이며,</p> <p>사업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전문탁관리업체의 협의과정에서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화프로그램 이용 시 개별 비용 발생 및 개별세대에 관리비로 부과되며, 전문탁관리업체가 변경될 경우 서비스 운영 종료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공된 공사부위, 추가 설치된 전자제품 및 집기/비품 등을 주민공동시설 내에서 철거 및 반납되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카페&라운지(SPC) 입주민 스스로 커피를 추출하는 오픈커피스테이션으로 무인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p> <p>커피머신, 정비 및 인테리어 카페는 제공되며 이용 시 개별비용이 발생하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운영시간 및 방식은 추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작은도서관(교보문고) 도서와 전자책이 제공되며 무인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큐레이션 서비스는 1년 500권씩, 2년 동안 사업주체(시행사)에서 비용을 지급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별도 약정된 기한 이후에는 서비스의 운영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p>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클럽클라우드 옥외공간 일부에 하부세대의 원활한 배수 성능 확보를 위한 통기배관 및 우수입상관등이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p> <p>주민공동시설 난방 급탕을 위한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조망권, 소음, 진동, 열기,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주민공동시설(클럽자이인)은 지하층에 설치되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로 일부 가능합니다.</p> <p>클럽클라우드 외부장의 경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창호 위치 및 창호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어여쁜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등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개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클럽클라우드 내 카페&라운지 부근 선큰의 출입문은 사업승인도서와 일부 다르게 분양기탈로그(풀도어)를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성기사항은 향후 설계변경 예정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p> <p>부력방지是为了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p> <p>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기시스템 기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p> <p>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재생식창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장기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p> <p>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병목산 유입수를 단지 내 하수 BOX를 통하여 처리 예정이며, 저하저수조와 배수구 저수조 및 우수펌프시설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유자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p> <p>지하주차장, 필터리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통로 방지器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p> <p>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조명, 씨앗등, 조명 조명, 씨앗등, 조명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등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 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애간장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환통,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기계실, 웨이터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p> <p>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p> <p>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2, 138대, 근린생활시설 10대, 총 2,148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구역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p> <p>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적하부 주차구획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 ~ 지하 3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예전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급속 2개, 콘센트형 84개가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급속 전기차 충전설비 중 1개는 AC3상, DC콤보, DC차데모 커넥터 내장 타입이며, 나머지 1개는 DC콤보와 DC차데모 커넥터 내장 타입입니다.</p> <p>지하주차장 래밸계획 및 차로 높이는 공사중 청장 배관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p> <p>지하 2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주통행로)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하며,</p> <p>지하 3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주통행로) 유효높이는 2.3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이 불가합니다.</p> <p>지하 3층 주차장은 전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며, 지하 2층 주차장은 103동에서는 직접 출입이 불가합니다.</p> <p>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3개소입니다.</p> <p>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 소음 및 차량불빛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 일부 구간에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p> <p>주차구획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경행주차, 평행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 등)의 위치 및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에 필요에 따라 부속시설(기계실, 웨이터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전기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에 인접한 주차구획간은 출입문으로 인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주동의 출입 및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의 순회이 불가능한 곳에는 회차공간을 구획하였으며,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01동, 106동, 108동, 111동 하부에 지하주차장의 통로가 설치되어 차량의 이용에 따라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과 외기에 면한 부위 및 근린생활시설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경사로 및 단자가 계획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과 공동주택 엘리베이터홀과 연결된 수층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별도로 상이하니 계약전 해당 평면의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p> <p>근린생활시설의 대지분은 아파트와 별도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획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01동 115동 부근 지상에 설치되어 재활용품보관소는 101동 지하2층, 115동 지하2층 부근에 설치됩니다.</p> <p>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처량의 당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을 저수조, 고가수조, 터널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은 대지 및 전면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호실별 출입문, 바닥면의 높이 및 층고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단차부의 위치, 바닥면의 높이 및 층고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로시 상가 전면에 계단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장에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101동 인근 지상, 115동 인근 지상에 설치됩니다.</p> <p>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외부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게 차단기로 동선이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출입구는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p> <p>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향후 업종, 점포의 크기, 인테리어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주로 인하여 소음,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공용설비 및 시스템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구분	내용
	<p>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p> <p>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1층 세대 2,400mm, 84㎡T 2,500mm, 116㎡A 2,400mm, 116㎡B 2,400mm)</p> <p>임주 시 세대내에 침실별 가구(불박이장 등)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족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p> <p>세대 내외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p> <p>현관, 현관창고, 비획정벌코너, 실외기실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옥실(옥조하부, 사워부스 등) 및 다용도실의 경우, 마감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p> <p>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p> <p>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실외기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께워지고 아래에 따라 벽돌이나 면적으로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p>펜트하우스 및 옥외공간타입 하부 세대에서는 상부 세대의 배관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옥외공간타입 인근상부 세대는 우천시 옥외공간 상부에 설치된 캐노피에 의한 빗물 텁과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울선 선택에 따라 가구 크기 및 디자인, 울선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다용도실 청호 중 보일러에 인접한 방향은 청호가 고정되어 설치되어 순집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보일러 반대 방향의 청호는 개폐가 가능합니다.</p> <p>세대 내 비내력 벽체는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적 / 골조 / 경량벽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84㎡T 타입의 경우 다용도실에 청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p> <p>59㎡, 74㎡A, 74㎡B, 84㎡C 세대의 드레스룸 Style Up 울선 선택 시 화장실 문 위치가 변경됩니다.</p> <p>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청호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어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으며,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면적이 줄어들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101㎡A, 101㎡B 타입의 부부욕실의 경우 옥실출입문 개폐 시 사워부스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어스토퍼가 설치됩니다.</p> <p>101동, 102동, 115동, 116동 1호의 저층세대에서 썬콘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이용, 또는 상가이용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반드시 견본주택의 모형 및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평면	<p>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호동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p> <p>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露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축면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p> <p>세탁기와 보일러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에 수전과 실외기실에 선호동이 설치되는 곳은 거울了一场 등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문단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p> <p>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p> <p>이로 인해 미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수 있고, 내부 마감(청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거나 별도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통한 인접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p> <p>발코니내에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p> <p>발코니 출입용 분침문 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됩니다.</p> <p>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1층 및 필로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화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충간소음 및 방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p>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테라스 및 펜트하우스 세대는 제외)</p> <p>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청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아파트 외부 청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을 부착 및 내수용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충수별로 청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청호의 개별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발코니	<p>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의 사용(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p> <p>현장 여건 및 임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을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청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정청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p> <p>청호에 설치되는 병풍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창호	<p>단위세대의 옥외공간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동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요구시 개방하여야하며, 등기사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옥외공간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이며, 비단레벨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최상층 옥외공간에는 실외기,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 될 수 있으며, 조망권·소음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옥외용 수전이 설치 된 경우에는 거울了一场 등파를 방지하기 위해 임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p> <p>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우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옥외공간 진입을 위해 단위세대 발코니 외부 청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옥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임주자에게 인도하는 옥외공간 건축 기본마감(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외에 임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타일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임주자는 옥외공간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하며</p> <p>공사 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 합니다.</p>
단위 세대	<p>84㎡T, 116㎡A, 116㎡B 옥외공간의 경우 임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의 경우 책임은 임주자에게 있습니다.</p> <p>옥외공간에는 조경용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부위에 물막침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임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p> <p>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공간은 건축법상 상부 지붕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p> <p>옥외공간 상부에는 낙하를 방지 위한 시설물이 계획될 수 있으며, 실시설계 시 형태, 크기, 위치, 유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옥외공간에는 주후 유지보수를 위한 고수 액수 작업시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고리 혹은 안전고리 체결용 매입철을 등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84㎡T, 116㎡A, 116㎡B 옥외공간은 안내가 협의결과에 따라 글자색 또는 커미기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일부 세대에는 프라이버시를 위해 옥외공간에 세대간 경량칸막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경량칸막이의 크기, 위치, 재료, 디자인,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84㎡T, 116㎡A, 116㎡B 옥외공간에는 옥탑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불박이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옥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한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통보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재자류, 타일류, 상면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주택형별 올선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물류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옥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p> <p>인접세대간 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세대는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옥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냉장고장 형태는 올선선택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시 냉장고(임주자 직접 설치 가전)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출출될 수 있습니다.</p> <p>유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사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일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 <p>목침호, 시트핀발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시 Staple Tacker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p> <p>옥실장, 사워부스, 시스템선반의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露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흰화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p> <p>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적용되는 포셀린 및 도기질 타일은 대형타일 및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자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줄눈 두께 상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유상음선 품목인(116㎡A/B는 기본제공) 현관 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유상음선 품목인(116㎡A/B는 기본제공) 현관문은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침실과 옥실도어에 손기임방지 장치가 제공되며, 형태·재질·규격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주방가장, 냉장고장, 불박이장,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장시 제공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마감특화 페커지 올선, 공간올선 등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리자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세대 내 청호 상부의 커텐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텐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신발장 오픈장은 59㎡에 한하여 미제공됩니다.</p> <p>신발장 하부센서등, 신발장오른장센서등은 현관 PKG 선택시에만 제공되는 품목입니다.</p> <p>유상음선품목(116㎡A/B는 기본제공) 벽 판넬 조명형 드레스룸선반의 경우, 시공여건에 따라 시공디태일, 사이즈, 규격, 디자인,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가구 및 마감재	<p>- 45 -</p>

구분	내용
	<p>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환기시스템 및 육실배기, 주방배기是为了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육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육실팬이 설치됩니다.</p> <p>세대 내부의 육실 단자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육실 출입 시 육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p> <p>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기본 냉매배관은 천장 속 노출 냉매배관으로 변경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설치 공사는 변경공사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p> <p>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기대 및 에어카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p> <p>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환경조절기 등을 시스클리인 선택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른 건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건본주택 소화 시설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p> <p>(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미감 사용, 우물천장, 커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전기 / 기계 / 설비	<p>1층 세대 하부에 각종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압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육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p> <p>침실, 알파룸, 베터룸이 옵션 선택에 따라 대형 드레스룸 및 팬트리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치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p> <p>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패스카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p> <p>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판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령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음선,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p> <p>하이브리드 등 전기쿡탑 기본 적용으로 가스 배관은 세대 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까지만 제공되며, 가스쿡탑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p> <p>주방옵션 선택시 후드 타입에 따라 인근 천정에 자동식소화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일부 대형평형에는 싱크대 하부 난방분배기 이외 별도 추가의 난방분배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공간제약과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p> <p>소방인허가청 요구조건에 따라 3~10층 구간에는 침실, 거실, 별코니 등 단위세대 내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p> <p>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건본주택	<p>건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체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건본주택의 온도조절기,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클리인,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령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타입도옵션선택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p> <p>건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판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령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p> <p>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p> <p>건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건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건본주택 미건립타입인 74㎡A, 74㎡B, 84㎡A, 84㎡C, 84㎡T 타입의 마감재는, 건본주택 건립타입 59㎡, 84㎡B 타입에 준하여 시공됩니다.</p> <p>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p> <p>건본주택에 설치된 위생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위생기구가 설치됩니다.</p> <p>건본주택내 설치된 주택형의 경우 해당 동의 공동부까지 표현하지 않아 일부세대에는 공동부의 벽체가 보일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확인 후 계약 체결 바랍니다.</p>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제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으로 문의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건본주택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506	분양사무소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506
	분양문의	1544-9548
	사이버 건본주택 (공식 홈페이지)	http://xi.co.kr/es
	시행/수탁 	위탁 (주)라온도시개발
		시공 